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944-01

친환경인증 농가의 GAP 취득 연계 방안

Policy Development for Promotion of Good Agricultural Practice
to Certified Producer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최종보고서(2017.12)

- 요약 분 -

연구기관 |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농림축산식품부

연구 담당

유병덕	책임연구원	연구총괄, 친환경인증 농가의 GAP 취득 연계 방안
김난영	연구원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GAP 인증제도
이승영	연구원	GAP 인증에 관한 친환경농업인·소비자 인식 조사

목차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2장.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제도	5
제3장. 친환경농업인의 GAP에 대한 인식 조사	23
제4장. 친환경 및 GAP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26
제5장. 친환경인증 농가의 GAP 취득 연계 방안	29
제6장. 결론	49

표 목차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제도

표 1. 친환경인증 및 GAP 인증 일반 현황 비교	6
표 2.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 관리 시스템 비교	7
표 3. 친환경 + GAP 병행인증 기관 지역분포	9
표 4. 친환경-GAP 병행인증 확대를 위한 정책개선 희망사항	12
표 5. 주요국 GAP 비교	17
표 6. 친환경인증, GAP, 글로벌갭(GLOBALG.A.P.) 관리 시스템 비교	20

제3장. 친환경농업인의 GAP에 대한 인식 조사

제4장. 친환경 및 GAP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표 7.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변화 (단위: 명(%))	28
--	----

제5장. 친환경인증 농가의 GAP 취득 연계 방안

표 8. 작물 유형에 따른 생물학적 리스크 분류	35
표 9.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비교	38
표 10. 유기농산물 인증기준 개정안 제안	40
표 11. GAP 인증기관 지정 관련 규정 개정안	43
표 12. 유기농가에서 글로벌갭(GLOBALG.A.P.) 적용 시 적용되는 기준 (권장기준 제외)	45
표 13	54

제6장. 결론

그림 목차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장.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제도

그림 1. 글로벌갭(GLOBAL.G.A.P.) 기준 구성 14

제3장. 친환경농업인의 GAP에 대한 인식 조사

제4장. 친환경 및 GAP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그림 2. 농산물의 후생가치와 보건가치의 효용극대 소비점 27

제5장. 친환경인증 농가의 GAP 취득 연계 방안

그림 3. 친환경농산물과 GAP 통합적 연계 개념도 30

그림 4. 친환경과 GAP의 독립적 연계 개념도 32

제6장. 결론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 친환경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

- 친환경농업의 본질적 목적은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는 것으로 농산물의 안전성을 우선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
- 농산물의 안전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통하여 확보
-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GAP의 적용 목적을 구별할 필요가 있음
 -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업은 생물다양성, 자원의 순환, 토양 환경의 보전 등 농업생태계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주요 과제¹⁾

- 식품안전을 위한 전문적인 제도는 GAP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주요 목적과 구별해야 함
- 유기농산물은 관행농산물에 비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면에서 화학적,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음
-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 요건
 - 자연발생적인 화학적 위해요소
 - 유박 등 부속하지 않은 유기질 비료의 생물학적 위해요소
 - 수확 과정과 농산물 취급과정(수확후 처리 등)에서 농산물의 안전관리
- GAP를 통한 안전성 강화 효과
 -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제고하는 방안으로 GAP 적용 가능성
 - 농산물의 안전성 외에도 농작업자의 건강·안전·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GAP가 효과적
 - 환경보전 및 농업생태계 보전 과정을 통하여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은 건강한 농산물로서의 가치에 농산물의 안전성을 더욱 제고함으로써 가치의 상승효과를 이룰 수 있음

⇒ 친환경농산물의 건강성 + GAP의 안전성 = 가치의 상승

1) CAC GL 32. (코덱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농관원 번역판
 서문 제7항. 유기농업은 생물의 다양성, 생물학적 순환의 원활화, 토양의 생물학적 활동 촉진 등 농업생태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강화시키는 총체적 생산관리제도이다.

□ 친환경 소비시장의 확대 전략의 필요

- 소비자는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식품정책으로 인식
 - 식품소비 정책 중 식품안전보장(2015, 62.1%)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
 - 국민 건강 추구를 위한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으로 식품안전 관리(2015, 31.1%)를 선택

- 친환경농산물은 관행농산물에 비하여 퇴비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 생물학적 위험(Risk, 이하 ‘리스크’)²⁾이 더 높은 것으로 오해
 - ⇒ 친환경농산물의 식품안전 사고 리스크를 더욱 낮추어 소비자의 선택 선호도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

□ 생산자 편익의 증대

- 생산자의 병행 인증 애로사항
 - 친환경인증농가가 GAP 인증을 병행하기 위해 농가의 부담이 이중으로 작용
 -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는 경우에 투입해야 하는 노력과 시간에 비하여 프리미엄 기대가 낮음

2) 식품안전에 관련된 용어 중 Risk는 ‘위험’, ‘위험성’, ‘위해성’ 등 우리말 표현이 일관되지 않고, 부처별로 달리 쓰이는 바 본 연구에서는 ‘리스크’로 표현하고자 함

○ GAP 추가 인증 시 생산자의 부담 완화 방안의 마련

- 친환경인증 농가가 GAP 인증을 추가 획득 시, 인증기준의 중복 사항은 면제 및 간소화하도록 두 제도의 연계 시행 방안이 필요
- 친환경인증기관이 GAP 인증을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 방안 마련

제2장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제도

□ 친환경 및 GAP 인증제 현황

○ 가치와 목적

- 친환경인증은 화학자재의 투입을 최소화 또는 사용하지 않으며 농업생태계의 건강을 증진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친환경농산물은 건강한 농업생태계에서 생산됨으로써, 이를 섭취하는 소비자의 후생(厚生) 수준이 높아짐 (후생가치)
- GAP 인증은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농산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GAP 농산물은 위생 등 안전기준에 중점을 둠으로써, 이를 섭취하는 소비자의 보건(保健) 수준이 높아짐 (보건 가치)

- 친환경농산물과 GAP는 같은 목적(식품안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GAP가 친환경의 하위 수준 농산물로 평가되기도 함

⇒ 이는 잘못된 정보로, 두 제도는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이 다르며 상호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임

표 1. 친환경인증 및 GAP 인증 일반 현황 비교

구분 ³⁾	친환경인증	GAP 인증
개념	친환경농산물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전하면서 생산된 생산물(농·축산물을 포함)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의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산물의 안전성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 제고
추구가치	후생가치: 농업생태계의 건강과 소비자 건강을 증진시키고 강화	보건가치: 농산물의 안전성 위해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최초 도입	2002년 도입	2006년 도입
대상	농산물, 축산물, 양봉, 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취급자	농산물, 관리시설
인증건수(건)	농산물: 24,566 (유기: 5,163, 무농약: 19,403)	6,994
인증면적(ha)	농산물: 1,709,812 (유기: 1,647,542, 무농약: 62,270)	102,929
인증기관(개)	62	52

3) 본 표에서 작성된 인증건수, 면적, 기관수는 친환경인증정보관리 시스템 및 GAP 정보서비스 참조

○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의 주요 차이점

표 2.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 관리 시스템 비교

구분	친환경인증	GAP 인증
법적 관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효 기간	1년	농산물: 2년(인삼 및 약용식물: 3년) 농산물우수관리시설: 5년
분석	※ 고시 [별표2]5)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석 실시 - 토양: 잔류농약 ⁴⁾ (심사 시) - 토양: 중금속 ⁵⁾ (심사 시) - 수질분석 ⁶⁾ (5년/회) - 생산물 ⁷⁾ (심사 시) - 퇴비 ⁸⁾ (심사 시)	- 토양 중금속 분석(5년/회) - 수질분석(5년/회) - 생산물: 잔류농약(심사 시) - 생산물: 중금속(심사 시)
교육	- 생산자단체 담당자의 경우 4시간 이상 2년에 1회 기본 교육 이수	- 2년에 1회 기본교육 이수 - 작업자 위생교육 실시
관리 계획서	- 생산계획서 작성 - 단체: 생산자 단체 공동사항	- 농산물별 표준코드에 따른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 단체: 사업운영계획서
위해 요소 분석	- 없음	- 과정별 농산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소 분석표 작성 (재배환경, 재배단계, 수확 및 수확 후 과정)
중요 관리점	- 없음	- 중요관리점 결정표 작성 -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 설정 - 중요관리점별 점검 방법 설정
추적성	- 기록 및 관리를 통한 이력추적 관리	- 기록 및 관리를 통한 이력추적 관리
종자	- 유전자변형농산물인 종자 사용 금지 - 유기종자 우선 사용(유기기준)	- 종자산업법에 따른 보증표시 또는 품질표시가 된 종자 사용 - 자가 채종 및 육묘 시 종자의 생산정보 기록관리 실시
토양	-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중금속, 잔류농약)	- 토양중금속기준 준수

(2017.12.12.)

- 4) 최근 1년 이내에 농약이 검출되었거나, 생산물을 채취 할 수 없을 경우 또는 생산물 검사보다 토양 검사가 실효성이 높은 경우 분석 실시
5) 오염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지역,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주변지역 등인 경우 분석
6) 오염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지역,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주변지역, 최근 5년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용수
를 사용하는 경우(재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개하거나 작물수확기에 생산물에 직접 관수하는 경우에 한함)
7) 최근 1년 이내에 농약이 검출된 경우,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된 종자를 사용한 경우, 관행 재배지로부터 오염우려가 있는 경우, GMO의 혼

구분	친환경인증	GAP 인증
작물 보호제	- 농약 사용 금지	-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 -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 시기
	- 자재의 사용내역 기록관리	- 농약의 사용내역 기록관리
	- 농약살포 장비로 인한 혼입과 오염 방지	- 농약살포 장비의 청결
	- 없음	- 농약 혼용가부표 준수
	- 자재의 보관 방법에 대한 기준 없음	- 농약 보관 장소의 안전성과 잠금장치 설치
	- 자재의 보관 방법에 대한 기준 없음	- 농약의 구분관리
	- 없음	- 사용 후 남은 농약과 폐기물 처리
비료	- 적정 시비(과다 사용 금지)	- 적정비료의 사용
	- 퇴비, 유박 등 유기질 비료의 보관 방법 없음	- 비료의 구분관리
수확 작업 및 보관	- 없음	- 수확용 농기구 및 장비의 청결관리
	- 없음	- 등급 외 농산물 선별관리
	- 유기농산물의 저장, 수송 및 포장 시 저장·포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 유지, 외부로부터 오염 방지	- 수확물 보관 창고 또는 처리시설의 위생적 관리
수확물 취급 시 작업자의 위생관리	- 없음	- 작업 전 손을 청결하게 씻고 손 건조기 또는 청결한 수건 사용
	- 없음	- 품목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위생복장 착용
	- 없음	- 도구와 설비의 위생적 관리
	- 없음	- 작업장 청소 및 기록
환경오염 방지 및 농업생태 계 보전	- 없음	- 농장에서 발생한 오염물 관리
	- 없음	- 유기농업자재병과 폐비닐 처리
	- 없음	- 폐기물, 폐수 처리에 대한 기록 관리
작업자의 건강, 안전	- 없음	- 작업자의 건강 및 안전관리
	- 없음	- 농약 살포시 보호장비 착용과 관리

입이 우려되는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 농약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단체심사 시 선정된 표본 농가, 신규 개인신청 농가
8) 유기·무항생제 사료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사료를 먹인 농장 또는 경축순환농법에서 유래되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된 퇴비를 사용하는 경우
(유기농산물에 한함)

○ 인증기관 현황

- 2017년 12월 기준으로 친환경인증기관은 62개, GAP 인증기관은 52개, 친환경+GAP 병행인증 운영하는 인증기관은 30개
- 친환경+GAP 병행인증기관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전라도 지역(12개)에 집중

표 3. 친환경 + GAP 병행인증 기관 지역분포

지역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제주
인증기관수	4	1	3	5	2	5	3	5	2

자료: 친환경인증관리 정보시스템, GAP 정보서비스(2017.12)

- 인증기관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있으며, 인증농가에서 병행인증 신청 시 어려움은 없음. 다만 병행인증을 받는 경우 친환경과 GAP 인증 심사원 자격이 갖추어진 심사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인증 시 소용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필요

□ 친환경-GAP 병행인증 사례 분석

○ 친환경-GAP 병행인증 농가의 특성

-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607명 중 GAP 인증을 받은 농가는 28명(4.6%)
- 친환경농업과 GAP를 동시에 실천하고 있는 농가의 분포는 60대, 50대, 40대 순
- 친환경농업과 GAP를 동시에 실천하고 있는 농가의 작목은 수도작이 53.8%로 가장 많이 나타남
- 그밖에 친환경인증을 받은 엽채류, 과채류, 버섯은 잡곡 등 다른 작목에 비하여 GAP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잡곡과 과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실적이 낮은 작물들이므로 동시 인증 실적도 낮게 나타남
- 친환경농업과 GAP를 동시에 실천하고 있는 농가의 경작면적은 1ha 미만인 농가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경작면적이 클수록 낮은 분포
- 친환경농업과 GAP를 동시에 실천하고 있는 농가의 소득(연간 농업소득) 분포는 2천만 원 이하 극소규모 농가가 12농가로서 42.9%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친환경-GAP 병행인증 농가의 특성에 따른 시사점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들 중 GAP 인증을 받은 농가들, 즉 두 인증을 동시에 받은 농가들은 대규모 개인농가보다는 소규모 농가들로 구성된 생산 단체에 소속된 생산자들인 것으로 분석됨

- 수도작 농가가 많은 이유는 GAP 인증제 시행 초기부터 2014년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을 중심으로 인증이 확대되면서 농업법인 등 대형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이용하는 단체에서 대부분의 인증을 받았기 때문
- 연간 농업소득 2천만 원 이하의 극소농 생산자들이 많은 이유도 주로 수도작 생산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후, GAP 인증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받을 수 있었기 때문
- 따라서, 친환경 인증농가의 GAP 인증 연계를 위해서는 생산자 단체를 통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임
 - 친환경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는 내부관리시스템(ICS)⁹⁾과 생산관리자가 준비되어 있어 GAP 인증을 받는데 용이
 - 생산자는 단체의 생산관리(Internal Control)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GAP 기준 및 인증 조건에 따른 추가적 지침에 따르기만 하면 됨
 - 친환경 인증농가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는 개별 생산자보다 규모화된 생산시스템으로 인하여 농산물 판매 마케팅 등에 유리

○ 친환경-GAP 병행인증 농가 인터뷰

-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GAP 인증을 동시에 받은 생산자들을 인터뷰하여 얻어낸 구술 답변을 종합하여 주제별로 요약 정리한 내용임. 인터뷰 결과 병행인증 농가들의 답변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된 내용과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 제3장의 생산자 설

9) Internal Control System

문조사 결과를 주로 검토하고 본 항은 보조적 조사로 기술한 것임

- 친환경-GAP 인증을 동시에 받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 30대 ~ 60대의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제주도에 소재하는 생산자(또는 업체) 9농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주요 재배 품목은 수도작, 엽채류, 과채류, 과수류, 버섯임
- 친환경-GAP 병행인증 확대를 위한 정책개선 희망사항

표 4. 친환경-GAP 병행인증 확대를 위한 정책개선 희망사항

주요 사항	세부 사항
판로확대 및 가격경쟁력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행인증 농산물은 하나의 인증을 받을 때보다 더 높은 가격이 보장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시장의 가격 프리미엄이 필요 - 정부의 친환경+GAP 병행인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정부의 홍보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GAP 병행인증 농산물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한 소비자들의 소비촉진 - 친환경농가가 병행인증을 할 때 정부 지원 혜택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
친환경+GAP의 멀티태스킹(Multi-Tasking)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GAP 전문 인력의(심사원, 강사 등) 경우 친환경농업 무용론 등 관행농업에 대한 인식이 편향되어 있음 - 친환경과 GAP 모두를 이해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인증 절차의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과 GAP 인증 절차 중 중복되는 과정을 반복하지 않고 한꺼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의 절차에 대한 상호 호환성 강화 - 또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의 경우 GAP 인증 시 친환경에 없는 기준은 추가 심사만으로 GAP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

□ 해외 유기농에서의 GAP 적용 사례

○ 주요국 GAP 운영 현황

- 미국(G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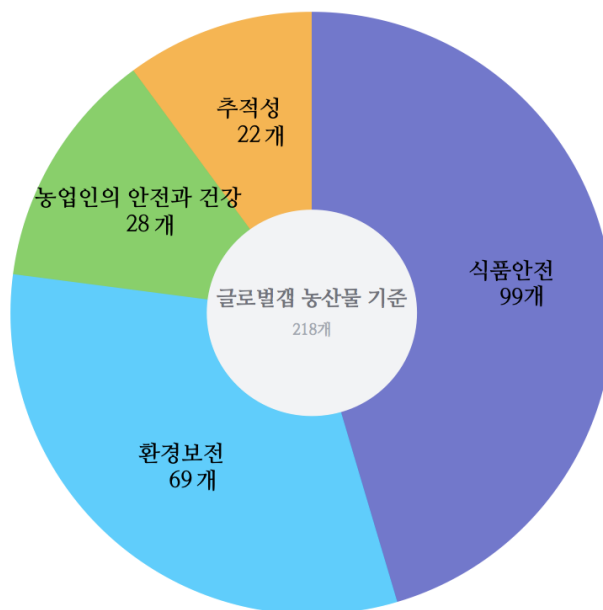
- 미국은 국가에서 GAP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GAP를 적용하도록 권유
- USDA는 2015년 50주(States) 푸에르토리코 및 캐나다에 대한 GAP 감사(Audit)를 수행
- 캘리포니아 Primus Labs 사의 GAP 기준을 살펴보면, 대체로 우리나라 GAP 기준과 유사하나, 식품안전과 지속가능한 토양관리에 우선권을 두고 있음. Primus Labs 사는 자체 GAP 기준에 따른 평가(Assessment)만을 실시하고 인증서는 발행하지 않음. 평가보고서를 농업인 및 농산물 유통업체(회원사)와 공유

- 유럽연합 글로벌갭(GLOBALG.A.P.)

- 124개 국가에서 170,000명의 생산자가 400여 가지의 품목에 대하여 인증을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390명의 생산자¹⁰⁾가 인증을 받고 있음
- 유럽연합은 GAP를 의무적용하고 있지 않으나, 민간 유통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글로벌갭(GLOBALG.A.P.) 농산물 기준은 총 218개의 기준으로 구성

10) 글로벌갭(GLOBALG.A.P.) 제공 자료 (2017.9)

그림 1. 글로벌갭(GLOBAL.G.A.P.) 기준 구성



- 일본 적정농업규범(GAP)

- 2002년 유통업체와 농산물 공급자들이 농산물품질관리를 위하여 자체 GAP 기준을 운영
- 2007년 JGAP에 대한 인증제도가 운영되었었으며 2009년 일본 정부에서 GAP 지침을 발표. 현재 JGAP은 일본 GAP 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음
- JGAP 외에도 현(縣, prefecture)에서 자체 운영하는 현(縣) GAP (Prefecture GAP)기준이 있음. 일부 현(縣)에서는 제3자 인증을 실시
- 국제수준에 맞는 GAP를 운영하고 농업인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산 현장에서의 지도와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GAP 인증 취득 확대를 위하여 인증체계를 강화하고 심사원의 증대, 단체 인증의 추진, GAP 기준에 따른 환경 개선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음

- 중국 양호농업규범(良好農業規範, GAP)

-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08년 11월 양호농업규범인증(CNCA-N-004:2007)이 시행
-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Certification and Accreditation Administr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서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중국질량인증중심(CQC)과 민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급, 2급으로 나누어 인증을 운영하고 있음. 인증 범위는 작물(화훼류 포함), 가축 및 가금류, 어업, 꿀벌임
- 중국 GAP 인증의 점수는 1등급~3등급 3가지로 나눔. 1급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등급~2등급 기준을 95% 준수해야 하며, 2급의 경우 1등급 기준만 95% 준수하면 됨. 3등급 기준의 경우는 국내의 권장 수준으로 필수 사항은 아님
- 중국은 2005년~2006년 FOODPLUS와 업무 협력을 하였으며,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2월 24일 글로벌갭(GLOBALG.A.P.) 과의 MOU 체결을 통하여 중국의 1급 GAP와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에 대한 동등성을 획득
- 2017년 중국은 GAP 확대를 위하여 주요 농업 지역에서 GAP 인증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농산물 생산에서 취급 전 과정에서의 식품 위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품질 향상, 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GAP 생산물에 대한 브

랜드 이미지를 높이고자 함¹¹⁾

- 기타 아시아 국가의 GAP

- 대만(TGAP), 인도네시아(IndoGAP), 태국(ThaiGAP), 필리핀, 파키스탄, 피지 공화국, 몽고, 스리랑카, 베트남 등 전반적으로 GAP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 ASEAN 경제 커뮤니티에서는 각 국가의 대표를 선출하여 워킹 그룹을 운영. 워킹 그룹에서는 소속 국가의 GAP 프로그램과 글로벌갭(GLOBALG.A.P.)에 대한 검토 실시. 또한 각 분야별 GAP 가이드북을 만들어 GAP 농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각국의 GAP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글로벌갭(GLOBALG.A.P.)과의 동등성 추진을 주요 의제로 하고 있음

11) CNCA(2017.12.08.), <http://www.cnca.gov.cn/>

표 5. 주요국 GAP 비교

구분	한국	글로벌갭 (GLOBALG.A.P.)	미국	일본	중국
인증명	농산물우수 관리(GAP)	글로벌갭 (GLOBALG.A.P.)	규범	JGAP	1급/2급 GAP
시행연도	2006년	1997년	2002년	2006년	2008년
인증유효 기간	2년	1년	1년	2년	1년
인증기관	민간인증기관	민간인증기관	민간인증기관	민간인증기관	정부 및 민간인증기관
인정기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민간인정기구	주정부	JGAP 협회	국가인증인가 감독관리 위원회 (CNCA)
인증 범위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농산물, 화훼류, 축산물, 수산물, 유통, 사료	농산물	농산물, 축산물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 GAP와 글로벌갭(GLOBALG.A.P.) 비교

- 위험평가(Risk Assessment)¹²⁾

- 글로벌갭(GLOBALG.A.P.)에서는 1)식품안전, 2)작업자의 안전·복지·건강, 3)환경 보존에 대하여 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위험평가를 통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하도록 함
- 국내 GAP의 경우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12) 위험평가(Risk Assessment)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해요인에 대하여 농가단위에서 위해요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글로벌갭(GLOBALG.A.P.)에서는 매년 위험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미생물, 잔류농약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에 대하여 평가를 하도록 함. 현재 GAP에서는 HACCP에서 요구되는 위해요소 관리(CCP)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에서는 현장 적용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글로벌갭(GLOBALG.A.P.)에서는 위험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제공하며 평가 양식을 제공하지는 않음. 전문가를 통하여 위험평가에 대하여 지도받는 것을 권장함

- 해충종합관리(IPM, Integrated Pest Management)

- IPM은 종합적인 해충 통제 기술을 사용하여 해충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고 경제성을 고려한 농약사용을 통하여 적절한 경제적 방제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방법임
- GAP에서는 IPM과 유사한 내용으로는 농산물우수관리기준 6-1-6.에서 ‘농약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예찰을 통한 화학적 방제 수단, 생물학적 방제 수단, 물리적 방제 수단, 저항성 품종 선택, 재배적 방제 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병해충을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며 권장사항으로 간략하게 제시
- 글로벌갭(GLOBALG.A.P.)에서는 인체에 안전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유기농인증을 받은 경우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을 받는 것이 유리함

- 전문 GAP지도사(Farm Assurers)

- 글로벌갭(GLOBALG.A.P.)에서는 생산자를 위한 전문 GAP지도사 양성 프로그램이 있음. 글로벌갭

(GLOBALG.A.P.)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 및 시험을 수료하게 되면 공식 전문 GAP지도사인 팜어슈러 자격을 부여함¹³⁾

- 국내에도 각 농장의 특성에 따라 인증 적용이 가능하도록 현장 지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풀(Pool)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 또한 친환경과 GAP 인증을 같이 받고자 하는 경우 글로벌갭(GLOBALG.A.P.)에서 팜어슈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친환경-GAP 지도사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

13) 글로벌갭(GLOBALG.A.P.) 공인 팜어슈러는 2013년부터 운영하였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72명의 팜어슈러가 있으며 국내에 공인받은 팜어슈러는 3명임

표 6. 친환경인증, GAP, 글로벌갭(GLOBALG.A.P.) 관리 시스템 비교

구분	친환경인증	GAP	글로벌갭(GLOBALG.A.P.)
특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생태계의건강을 증진시키고 강화하는 것을 강조 - 인증품 생산계획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강조,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함.(농산물우수관리팀, 품목설명서 작성, 재배흐름도,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별 점검 방법 설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현장에서 해충종합관리(IPM), 위험평가(Risk Assessment), 환경보전, 추적성, 작업자 복리후생 등에 대해 강조함
대상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축산물, 사료, 양봉, 취급자,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 (1차 생산물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축산물, 화훼, 수산물 - (1차 생산물 대상)
인증마크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품목에 대해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품목에 대해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제품에 인증마크 사용할 수 없음
인증기관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O 17065(인증기관 국제기준) 인정. - 글로벌갭(GLOBALG.A.P.)과 MOU 맺은 인정기관(AB) 으로부터 인정
심사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 교육 수료, 심사원 자격 테스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경력, 교육 수료, 심사원 자격 테스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 경력, 트레이닝 수료, 심사원 자격 테스트 등
인증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농, 축, 식품 등의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농업인, 취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 농업인, 축산업인, 양식생산자, 취급자
추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대상에 대한 생산 및 출하 정보를 통하여 추적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대상에 대한 생산 및 출하 정보를 통하여 추적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대상에 대한 생산 및 출하 정보를 통하여 추적성 확보 - 저장, 운송, 재포장, 세척, 수확 후 관리 등에 대한 유통인증(CoC)

○ 유기농 생산자의 GAP 적용 사례

- USDA NOP 동시인증 사례는 희박

유기농인증 사업자 중에 GAP 인증을 받고 이를 홍보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GAP 인증이 사업자 간의 거래(B to B)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해석됨

- Dole사의 유기농과 GAP 병행 추진

- Dole은 세계 최대의 유기농 과일 생산자이면서 농산물 유통업체로서 주로 품목은 바나나와 파인애플임.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으로 유기농업과 GAP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하며, 자체적으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친환경적인 생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GAP는 Dole의 친환경적인 생산 프로그램의 일부임

- USDA NOP, EC834/2007, 글로벌갭(GLOBALG.A.P.) 등 8종의 다양한 인증서는 하나의 인증기관으로부터 한번의 심사로 처리되어 인증비용과 관리비용이 중복 투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유기인증과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의 관리 매뉴얼(품질관리절차서 등) 및 기록물은 인증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

: Dole Quality Procedure가 전 세계의 농장에 공통으로 적용됨

- 유럽 농산물 시장에서의 유기농과 글로벌갭(GLOBALG.A.P.)

- 유럽 도소매 유통업자들은 주로 신선식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는데, 특히 먼 나라에서 수입되는 농

산물에 대해 안전성에 관심이 높음

- 대형 소매 유통업체들은 글로벌갭(GLOBALG.A.P.) 기준이 소농들이 실천하기에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인식하면서도, 일부 유통업체들은 농산물 매입의 기본 조건으로 간주
- 유럽에서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부분 대형 소매업체(마트류)들이고 소형 소매업체나 도매업체는 글로벌갭(GLOBALG.A.P.)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함

- Kadoka 파인애플 생산자단체 사례

- EU 유기농인증과 글로벌갭(GLOBALG.A.P.) 동시 인증 생산자이며 우간다 및 탄자니아에서 생산하여 유럽으로 수출
- Kadoka 생산자단체는 유기농 생산을 위해 설립되었으나, 유럽의 소매업체들이 유기농 인증서와는 별도로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을 요구하여 유기농과 GAP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음

제3장

친환경농업인의 GAP에 대한 인식 조사

□ 조사 개요

- 친환경인증 농업인들의 GAP 인증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국내 친환경 인증기준 및 절차 개선 방향 설정에 참고
- 친환경인증 농업인들이 GAP 인증을 추가로 받으려 할 때에 필요한 기술적 요건을 파악
- 친환경인증 농업인들과 소비자들의 인식을 조사 및 비교 분석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 정책을 도출

○ 설문조사 내용

- 친환경인증농가의 GAP 인증 추가 획득의 필요성: 소득에 대한 기대, 신뢰성 향상에 대한 기대 등
- 친환경인증농가의 GAP에 대한 인식: 기준에 대한 이해, 식품안전 관련성 등
- 친환경인증농가가 GAP 인증을 추가 획득할 때에 애로사항 및 희망사항: 부담사항, 선호 인증기관, 실무적 개선사항 등

□ 친환경 농업인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른 시사점

○ GAP 가치에 대한 오해

- 친환경인증 농가에게 GAP 인증은 양립할 수 없는 이질적 인증으로 인식하고 친환경농산물이 GAP에 대해 우월한 것으로 인식
-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는데 비하여, GAP 농산물은 합성농약을 사용한 농산물로 인식
- 생산자들에게 GAP 제도의 목적과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GAP 추진에 따른 부담감

- 친환경인증에 대한 경험이 있는 생산자들은 GAP 인증이 상대적으로 더 쉬울 것이라 인식하고 있음
- 친환경 농가가 GAP를 추가로 추진할 때에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2중 관리에 대한 부담 완화를 기대
- 현재의 친환경인증기관이 GAP를 함께 추진하는 구조를 가장 선

호

- 친환경인증 농가는 GAP 인증기준 중 식품안전 관리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이론에 대해 추가로 적용하는 데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음
- 친환경인증 농가에게 GAP 인증을 별도로 적용함에 따른 업무량 등 농가의 투입노력량을 감축하고, 인증비를 절감하도록 하여 GAP 추가 인증에 대한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

○ 인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정책 보완 기대

- 친환경과 GAP 인증을 따로 받기보다는 두 제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선호
- 친환경과 GAP 인증을 동시에 받을 때에 생산자에게 돌아오는 편익의 증가를 희망
- 친환경 생산자가 GAP를 추가로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증 절차의 개선뿐만 아니라 소득 증대 등 경제적 유인책이 필요

제4장

친환경 및 GAP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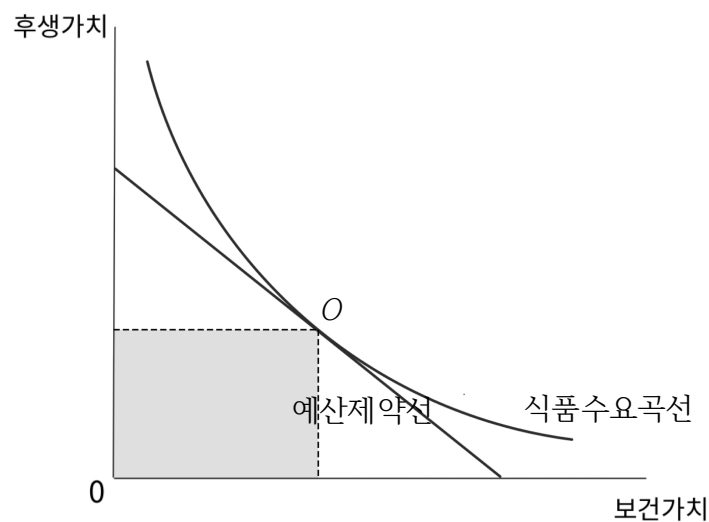
- 소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에 대한 인식과 농산물 신뢰도 개선에 대한 의견, 구매 선호도 등을 조사

□ 소비자 인식 조사의 결과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GAP 인증이 추가되는 경우 소비자 효용의 극대화
 - 응답자들은 GAP보다 친환경인증에 더 익숙한데, GAP를 통해 농산물의 위생 등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기대함

- ⇒ 이는 소비자의 후생(厚生) 가치를 높이는 친환경농산물
과 보건(保健) 가치를 높이는 GAP 농산물의 병행추진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할 방안임을 시사함
- 소비자의 예산제약 하에서 농산물 구매 시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은 <그림 4-1>와 같이 예산제약선과 식품곡선의 접점(O)에서
형성

그림 2. 농산물의 후생가치와 보건가치의 효용극대 소비점



- 토마토의 가치 추정을 위해 실시한 선택실험법에서도 관행농업
에 대한 가치 증가분이 1kg 당 유기농(2,125원), 무농약(1,731
원), GAP(1,414원) 순으로 추가지불 의사가 나타나 GAP 인증
농산물의 위생관리 등 식품안전 가치가 인정되고 있음
- ⇒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이 GAP 인증을 추가로 받는 경우,
토마토 1kg 당 1,414원의 가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도는 과거 조사와 유사

-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도는 선행 연구(2005, 2007)에서 나타난 신뢰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뢰도가 살충제 계란 파동의 영향이 없었지만, 여전히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표 7.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변화 (단위: 명(%))

조사기관 (연도)	매우 신뢰	신뢰	보통	불신	매우 불신	합계	신뢰도	
							5점 척도	백분율
이시도르연구소 (2017)	6 (2.0)	95 (31.7)	164 (54.7)	31 (10.3)	4 (1.3)	300 (100.0)	3.23	64.6
미래농정연구원 (2007)	8 (8.0)	39 (39.0)	29 (29.0)	19 (19.0)	5 (5.0)	100 (100.0)	3.46	69.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5)	21 (2.1)	302 (30.4)	542 (54.7)	118 (11.9)	8 (0.8)	991 (100.0)	3.28	65.6

제5장

친환경인증 농가의 GAP 취득 연계 방안

□ 친환경인증과 GAP 연계의 제도적 타당성 검토

○ 소비자의 식품안전 요구에 따른 제도 보완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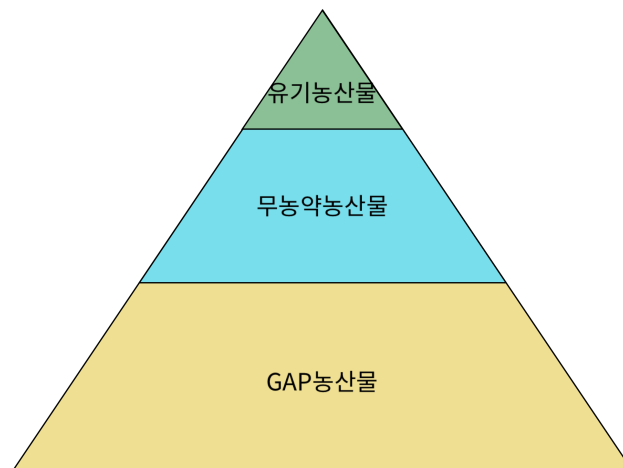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GAP(12.7%)보다는 친환경농산물(32.7%)에 대한 인지도가 더 높으므로 친환경농산물의 주요 속성과 가치인 건강증진 및 후생가치에 농산물의 위생수준을 높여 안전성 및 보건가치를 보완한다면 친환경농산물의 가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임
- 친환경농업과 GAP 연계를 강화하는 방법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없이 GAP 인증의 기준 중 친환경농산물 기준에 없는 사항을 친환경인증 농업인들이 추가로 추진하여야 함
- 친환경농업과 GAP를 분리하여 적용하는 방법은 GAP 인증이

선행 조건이 아니므로 친환경 인증기준을 개정하여 GAP의 위생기준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과 GAP의 구조적 관계 검토

- 친환경과 GAP의 구조적 관계를 검토하며 연계 방안 시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
 - 이해관계자(농업인)들의 수용가능성에 대한 문제
 - 국제적 동향 및 규범에 관한 문제
 - 인증 표시 운용의 문제
- 친환경과 GAP의 통합적 연계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친환경농산물과 GAP를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두 제도의 근거 법률을 단일화하거나 연계성을 강화하여 서로 인증의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로써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하여 GAP 인증을 우선 획득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임. 두 인증 제도의 통합은 법률의 통합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GAP 인증을 받아야 친환경 인증이 가능한 구조가 됨

그림 3. 친환경농산물과 GAP 통합적 연계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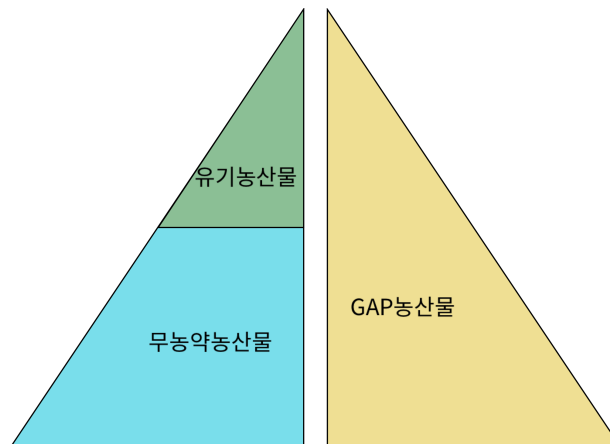
- 이해관계자(농업인)들의 수용가능성은 GAP 인증 추가 획득을 통해 얻게 될 이익이 GAP 인증을 얻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과 노력보다 클 경우에 높아진다고 할 수 있음
- 국제적 경향과 규범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유기인증과 GAP 인증의 제도가 통합적으로 연계 운영된 사례를 검색한 결과 그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제도의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두 가지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는 방법으로 적용
- 국제적 경향과 규범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유기인증과 GAP 인증의 제도가 통합적으로 연계 운영된 사례를 검색한 결과 그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제도의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두 가지 인증을 동시에 획득하는 방법으로 적용
- GAP가 친환경농업의 선행요건이 되는 구조는 GAP가 친환경농업보다 낮은 단계로 인식될 수 있음. 친환경농산물보다 낮은 단계로 인식된다면 친환경 농업인은 GAP 인증 표시를 사용할 이유가 없게 됨
- GAP가 친환경농업의 선행요건이 되어 인증을 필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GAP 인증표시를 함께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생산자에게는 더 많은 요건을 갖추고도 인증의 프리미엄을 제공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옴
- 결론적으로 GAP를 친환경농업의 선행요건으로 하는 구조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현행과 같이

두 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생물학적 안전성을 제고하여 가치 향상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음

- 친환경과 GAP의 독립적 연계 방안

- 농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친환경과 GAP 인증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가장 많음 (39.3%)
- 실제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서는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것을 지향하는 기준이 대부분이나,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억제하는 기준은 상대적으로 약함

그림 4. 친환경과 GAP의 독립적 연계 개념도



- 친환경과 GAP가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데에는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상호 독립적인 구조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생물학적 안전성을 보완하는 방법이 타당
- GAP 인증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선행요건이 아니므로,

기존의 친환경농업인이 GAP 인증을 획득하는 일은 선택적이므로 생산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음

- GAP 인증을 자율에 맡길 경우 친환경인증에 선호도가 더 높은 생산자들은 위생관리 등 GAP가 가진 인증기준을 실천할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
- 앞서 통합적 연계 방안에 대해 검토한 바와 같이 유기농과 GAP는 목적과 인증 성격이 다르므로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
- 해외 인증기관들의 경우에도 유기농과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두 인증을 모두 받고자 하는 생산자에게 심사업무의 통합적 적용이 가능 ⇒ 인증비용과 투입시간의 절감
- 친환경과 GAP를 독립적으로 연계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업의 가치와 GAP의 가치를 각각의 인증표시로 나타낼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GAP 인증은 통합적 연계보다는 독립적으로 연계하여 GAP가 친환경인증의 선행요건으로 하지 않고 수평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독립적 연계 운영이 타당

○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의 독립적 연계의 수준에 대한 검토

- A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생물학적 안전성만을 강화하는 방안
 - GAP 인증기준에는 생물학적 안전성에 대한 수준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비하여 강화되어 있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GAP 수준의 생물학적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써 화학적 안전성에 더하여 농산물의 안전

성을 강화. 다만, 친환경 생산자가 GAP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기준 외 GAP 필수기준을 추가로 준수하여야 함

- B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GAP 인증의 필수기준을 모두 보완
 - GAP 인증기준에는 농산물의 생물학적 안전성 외에도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준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친환경 인증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GAP 필수기준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포함하도록 하면,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친환경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
 - GAP 인증을 위한 필수기준을 친환경 인증기준에 모두 포함시키게 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음으로써 GAP 인증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음

□ 친환경농산물의 생물학적 안전성 보완 방안

○ 친환경과 GAP를 독립적으로 연계 운영하는 경우 GAP 인증 추진여부는 생산자 자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GAP 추진여부에 관계없이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안전성 기준의 보완이 필요함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생물학적 안전성 기준을 도입하는 시기를 리스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함

표 8. 작물 유형에 따른 생물학적 리스크 분류

리스크 수준	작물 유형	예시	적정 적용시기
리스크 상(上)	가식부위가 물, 흙 등 오염원에 접촉하는 농산물 중 가열조리하지 않고 섭취할 수 있는 농산물	딸기, 상추, 배추, 무	2018년
리스크 중(中)	가식부위가 물, 흙 등 오염원에 접촉하는 농산물 중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는 농산물	벼, 감자, 고구마	2019년
	가식부위가 물, 흙 등 오염원에 접촉하지 않는 농산물 중 가열조리하지 않고 섭취할 수 있는 농산물	토마토, 고추, 가지, 오이, 사과, 배	
리스크 하(下)	가식부위가 물, 흙 등 오염원에 접촉하지 않는 농산물 중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는 농산물	콩, 옥수수	2020년

□ GAP 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추가 요건

- 생물학적 식품안전 관련 기준 외의 사항들 -

- 친환경과 GAP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상호 연계하게 되면 GAP 인증의 추진 여부는 생산자 자율에 따르게 되나, 친환경농산물이 지속가능한 농업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GAP 인증을 추가로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친환경 인증기준이 GAP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사항과 GAP 인증을 위한 '필수' 요건 요약
 - 비료의 적치 및 보관 : 유기질 비료, 퇴비 등 비료를 보관할 때 (무농약농산물의 경우 화학비료 포함), 농산물, 포장재, 종묘, 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보관소를 지정하고 구분 관리할 것
 - 비료의 유출 방지 : 유기질 비료, 퇴비 등 비료가 강우 등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
 - 수확 및 취급 작업자의 개인위생 : 개인위생 및 질병관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생물학적 오염 방지
 - 취급 시설 및 도구의 청결 : 수확 후에 농산물을 취급하는 작업장, 설비, 용기, 운반 장비 등 전반적인 시설의 청결 유지 (농가 내 시설을 포함)
 - 농업용수원의 오염 방지 : 농장에서 발생한 오염 물질이 농업용수원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관리
 - 폐기물 분리수거 : 폐비닐 등을 분리수거하여 폐기물 집하장이나 전문 수거업자를 통해 처리
 - 농작업자의 건강과 안전 : 농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제거 또는 효과적으로 제어

- 교육 : 교육을 통해 GAP 기준을 숙지 (2년에 1회 교육)

- GAP 인증기관은 인증신청인(농가)이 친환경인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요약된 추가요건만을 심사하도록 절차 간소화 정책이 필요

□ 인증 절차 간소화 방안

- 친환경인증 농가가 GAP 인증을 추가로 받는데 드는 비용과 노력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면 GAP 인증으로 유도가 가능. 이에 대한 방안으로:
 - (1) 현재의 친환경인증기관에게 GAP 인증을 신청하여 한 번의 절차로(인증신청서류 및 기록관리 포함) 두 인증을 동시 추진,
 - (2) 한 사람의 심사원이 친환경과 GAP 인증기준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통해 GAP 인증 절차의 간소화가 가능
- 친환경과 GAP는 인증기준이 유사한 항목들이 있어, 친환경인증 심사 과정에서 GAP 인증기준의 다수가 두 기준에 중복되므로 해당 기준들은 이미 심사가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생산자는 친환경인증을 위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하면서 GAP 인증을 위한 추가 심사 사항만을 준비하면 되므로 심사비용과 준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 친환경인증기관을 GAP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

표 9.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비교

비교 사항*	세부 기준		친환경인증기관의 보완 필요성
	친환경인증기관	GAP 인증기관	
컨설팅 서비스	제공 금지	직접적 규정 없음	불필요
운영자금	3개월	6개월	필요
심사원 겸직	불가능	가능	불필요
상근심사원 수	5명	2명	불필요
심사원 최대 관리 농가수	400명/연	1,000명/연	필요 ¹⁴⁾
사무실 건축 유형	제한 없음	주택은 불가	불필요
심의관 자격기준	자격증 및 업무경력	없음	불필요
심의관 최대 심의 건수	15건/일	제한 없음	불필요
심의관 준수사항	준수사항 7개항	없음	불필요
업무 독립성	신청인의 정보제공 동의 필요	규정 없음	불필요
기타	인증품 포장재 검토 필수	규정 없음	불필요

- 인증기관 지정기준 중 한 가지 요건(인증기관의 운영자금 관련) 외 모든 기준에 대해 친환경인증기관의 요건이 GAP 인증기관보다 높거나 동등하고, 심사원 1인당 최대 관리농가수에 대한 영향은 보완이 필요. 따라서 현 친환경인증기관이 다음 두 가지를 보완하면 GAP 인증기관 지정이 가능

- 1.가.4) 최소 6개월 이상 인증기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14) 심사원당 최대 관리 농가 수에 대한 요건은 친환경인증기관이 GAP 인증기관에 비해 사실상 더 강화되어 있으나, 한 심사원이 두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최대 관리 농가 수의 보완이 필요함

- 1.나.1)가) 상근심사원 1인당 연간 400사업자 이하를 심사
- 친환경인증기관에게 GAP 인증 권한을 부여하여도 지정 기준에 적합
다만, 인증기관이 6개월의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심사원당 관리농가 수를 조정하여 적용하도록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기준의 개정이 필요

- 친환경인증 심사원에게 GAP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방안 검토
 - 두 인증을 동시 추진할 때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한 명의 심사원이 친환경, GAP 심사를 동시에 하는 것이 필요함
 - GAP 심사원의 자격기준은 모든 경우에 대해 친환경인증 심사원의 자격기준보다 낮거나 같음
 - 이밖에 심사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GAP 인증심사원 교육기관의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므로, 현 친환경인증심사원이 해당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GAP 심사원의 자격을 획득 가능

□ 친환경농어업법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 생물학적 안전성과 그밖에 GAP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을 친환경 인증기준에 반영하도록 개정한다면, 친환경인증을 받을 경우 GAP 인증기준에 충족되어 한 번의 심사로서 GAP 인증서를 동시에 획득하는 것이 가능
-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련 규정의 개선안을 구체적 개정안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의 내용 중 인증기준은 유기농산물을 기본 조건으로 제시하는 개정안으로, 무농약농산물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개정안을 제시할 수 있음

표 10. 유기농산물 인증기준 개정안 제안

법령	현행규정	제·개정안
농관원고시 2017-32 15)	별표1의 2. 라. 1) 유기농산물의 저장, 수송 및 포장 시 저장·포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유기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후략)	별표1의 2. 라. 1) 유기농산물의 <u>수확, 저장, 수송 및 포장 시 저장·포장장소, 관련 설비, 용기, 운반 장비</u> ,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고,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유기농산물이 아닌 농산물과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후략)

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32호.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1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7-31호.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법령	현행규정	제·개정안
농관원고시 2017-32	(없음)	별표1의 2. 라. 11) 농산물을 수확할 때에는 개인의 위생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전염병 증상이 있는 작업자는 농산물을 통해 질병을 옮길 우려가 있으므로 농산물 수확 작업 및 수확 후의 관리 작업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농관원고시 2017-32	(없음)	별표1의 2. 라. 12) 병해충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고사·손상된 농산물은 수확 과정에서 선별·제거되어야 하며, 수확한 농산물에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농관원고시 2017-32	별표1의 2. 마. 8)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포장) 내에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1의 2. 마. 8)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포장) 내에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퇴비 등 유기질 비료를 보관할 때에는 농산물, 포장재, 종묘, 농약 등과 접촉하지 않도록 구분하여야 한다.
농관원고시 2017-32	(없음)	별표1의 2. 마. 11) 퇴비 등 유기질비료를 보관할 때에는 강우 등으로 인해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농관원고시 2017-32	(없음)	별표1의 2. 나. 14)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수원 주변에 환경오염 유발 시설이 있거나 환경오염 물질의 유입이 우려될 경우에는 농업용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법령	현행규정	제·개정안
농관원고시 2017-32	(없음)	별표1의 2. 나. 15) 농업 자재의 용기, 페비닐 등은 분리수거하여 폐기물집하장이나 전문수거업자를 통해 처리하고, 생활쓰레기를 농장주변에서 소각·매립·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농관원고시 2017-32	(없음)	농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해당 위해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농관원고시 2017-31 16)	(없음)	별표1의 1. 나. 1) 라) 심사원이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심사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생산자 2.5인을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 사업자 1인으로 환원하여 계산한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관련 규정의 개정 제안

- GAP 인증기관 지정절차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지정심사의 결과를 인정한다면, 인증기관 지정 절차는 매우 간소화됨
- GAP 인증기관 지정 관련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친환경인증기관이라면 GAP 인증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시함

표 11. GAP 인증기관 지정 관련 규정 개정안

법령	현행규정	제·개정안
농수산물 품질관리 법 시행규칙 제19조	<p>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p> <p>⑨ (없음)</p>	<p>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p> <p>⑨ <u>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u> 제26조제1항, 「<u>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제29조제2항 및 제44조에 따라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인증기관이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 신청한 경우에는 ⑤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p>

법령	현행규정	제·개정안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농관원 고시) 제4조	(없음)	⑤ <u>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 ⑨에 따라 심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u>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농관원 고시) 제5조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사 결과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규칙 제19조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① 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사 결과 또는 <u>심사를 생략한 사유에 따라</u>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규칙 제19조 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 요령(농관원 고시) 별표1의 1. 나. 1) 나)	(1) 인증심사원 5명 이상(상근 2명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인증기관 지정 이후 다음의 인증심사원 확보기준에 따라 인증심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본문 생략) (나) (본문 생략) (다) (본문 생략) (라) (없음)	<u>(라) 심사원이 친환경농산물 인증 심사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사업자 1인을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생산자 2.5인으로 환원하여 계산한다.</u>

□ 친환경인증농가의 글로벌갭(GLOBALG.A.P.) 연계 및 수출 활성화 방안

- 친환경농업과 글로벌갭(GLOBALG.A.P.)은 상호보완적 프로그램으로 유기농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자가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글로벌갭(GLOBAL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총 200개의 기준에 대해 95%이상 충족해야 인증됨¹⁷⁾

표 12. 유기농가에서 글로벌갭(GLOBALG.A.P.) 적용 시 적용되는 기준
(권장기준 제외)

구분	글로벌갭(GLOBALG.A.P.) 기준(V5.1)	유기농에 해당 여부	기준 수
AF1.생산지	AF1.1. 생산지 이력	적용	2
	AF1.2. 생산지 관리	적용	2
AF2.기록	AF2. 기록 및 자가점검	적용	3
AF3.위생	AF3. 위생	적용	4
AF4.작업자	AF4.1. 건강과 안전	적용	3
	AF4.2. 교육	적용	2
	AF4.3. 안전시설	적용	5
	AF4.4. 보호장구	적용	2
	AF4.5. 작업자 복지	적용	5
AF5.위탁	AF5. 위탁사업자	적용	1
AF6.폐기물	AF6.1. 오염원의 식별	적용	1
	AF6.2. 폐기물/오염원 처리	적용	3
AF7.환경	AF7.1. 생태계 영향	적용	1
	AF7.2. 비생산 지역 보호	적용	0
	AF7.3. 에너지 효율	적용	1

17) 정확히 말하자면, 글로벌갭(GLOBALG.A.P.) 기준 중 필수기준(Major Must)은 100%, 준 필수기준(minor must)은 95% 이상 적합하여야 함. 200개 기준 외에도 권장기준(Recommendation)이 약 20개 있으나 인증 결정에는 영향이 없음

구분	글로벌갭(GLOBALG.A.P.) 기준(V5.1)	유기농에 해당 여부	기준 수
	AF7.4. 용수의 수집 및 순환	적용	0
AF8.불만	AF8.1. 불만 처리	적용	1
AF9.리콜	AF9.1. 리콜 절차	적용	1
AF10. 식품보안	AF10. 식품보안	적용	1
AF11.표시	AF11. 글로벌갭(GLOBALG.A.P.) 표시	적용	1
AF12.로고	AF12. 로고 사용	적용	1
AF13.추적성	AF13. 추적성 및 구분관리	적용	4
AF14. 매스밸런스	AF14. 투입/산출 분석	적용	3
AF15. 식품안전정책	AF15. 식품안전정책 선언	적용	1
AF16. 식품기만	AF16. 식품기만의 방지	적용	0
CB1.추적성	CB1. 추적성	적용	1
CB2.종묘	CB2.1. 종묘의 품질	적용	3
	CB2.2. 화학적 처리	NA ¹⁸⁾	2
	CB2.3. GMO 사용	NA	5
CB3.토양	CB3. 토양 관리	적용	6
CB4.비료	CB4.1. 비료의 전문가 자문	NA	1
	CB4.2. 사용 기록	NA	6
	CB4.3. 비료 보관	NA	7
	CB4.4. 유기질 비료	적용	3
	CB4.5. 비료의 성분	NA	1
CB5.용수	CB5.1. 관개 수요 측정	적용	1
	CB5.2. 관개 관리	적용	3
	CB5.3. 수질	적용	5
	CB5.4. 용수의 공급	적용	2
	CB5.5. 용수 탱크	적용	0
CB6.IPM	CB6. 종합적 해충 관리	적용	5
CB7. 작물보호제	CB7.1. 작물보호제의 선택	NA	4
	CB7.2. 작물보호제의 전문가 자문	NA	1
	CB7.3. 사용기록	NA	8
	CB7.4. 수확 전 안전사용기간	NA	1
	CB7.5. 남은 혼합액	NA	1
	CB7.6. 작물보호제의 잔류 분석	NA	7
	CB7.7. 작물보호제 보관	NA	15
	CB7.8. 작물보호제 취급	NA	4
	CB7.9. 빈 작물보호제 용기 관리	NA	6

구분	글로벌갭(GLOBALG.A.P.) 기준(V5.1)	유기농에 해당 여부	기준 수
	CB7.10. 오래 된 약제	NA	1
	CB7.11. 자가 제조	적용	1
CB8.장비	CB8. 장비 관리	적용	3
FV1.생산지	FV1.1. 리스크 관리	적용	2
FV2.토양	FV2.1. 토양 관리	적용	2
FV3.상토	FV3. 상토	적용	2
FV4.수확전	FV4.1. 수확 전 작업용수의 수질	적용	4
	FV4.2. 가축 분뇨	적용	1
	FV4.3. 수확 전 점검	적용	1
FV5.수확(후)	FV5.1. 위생의 원칙	적용	6
	FV5.2. 위생 시설	적용	5
	FV5.3. 수질	적용	1
	FV5.4. 포장/저장 시설	적용	9
	FV5.5. 온도/습도 관리	적용	1
	FV5.6. 해충 관리	적용	3
	FV5.7. 세척	적용	2
	FV5.8. 수확 후 화학 처리	NA	10
합계			200
적용되는 기준의 합계			120

○ 친환경농산물의 수출 활성화 전략 제언

- 수출 유망 작물에 대한 선별적 지원

- 국내 글로벌갭(GLOBALG.A.P.) 인증 현황을 보면 총 30건의 인증 생산자들은 과수, 버섯, 인삼, 파프리카 등 외국산 농산물에 비해 품질이 우수한 품목이 대부분
- 국내 수요에 대해서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적용하고, 수출 의향이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글로벌갭(GLOBALG.A.P.)을 유도
- 버섯과 파프리카는 수출전략 상품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

18) Not Applicable. “해당 없음”의 약식 표현

가 있음

- 글로벌갭(GLOBALG.A.P.) 시스템 도입 컨설팅 지원
 - 글로벌갭(GLOBALG.A.P.)의 특징은 다른 인증제도와 달리 생산자들이 공인 컨설턴트와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권장하고 있음
 - 친환경농산물 인증 생산자들 중 수출 의향이 있는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팜어슈어의 지도와 관리를 통하여 글로벌갭(GLOBALG.A.P.)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국제경쟁력 향상 및 수출 기회의 확대를 위한 정책 도입이 필요

제6장

결론

□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기대

-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과 GAP 농산물 모두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제도로 인식
- 소비자들은 위생을 관리한 GAP가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농산물보다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둘 다 인증 받아야 안전하다고 인식함
- 이를 두 제도의 본질적 목적으로 해석하자면, 소비자들이 농산물 구매시에 얻는 편익은 후생가치(건강 증진)를 높이는 친환경인증과 보건가치(질병 예방)를 높이는 GAP를 동시에 획득할 때에 극대화 된다고

할 수 있음

- 살충제 계란 파동 후에도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도는 과거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

□ 생산자의 GAP에 대한 오해와 부담의 해소 필요

- 친환경농산물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서 안전한 농산물이고, GAP는 농약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안전하지 않고 친환경의 하위 수준의 농산물로 인식
- 친환경 농업인들은 GAP 인증이 상대적으로 더 쉬울 것이라 인식하면서도, 심사비·분석비·시설개선 등의 비용과 인증관리에 추가될 노력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생산자들에게 GAP 제도의 목적과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 농업인이 GAP 인증을 추진할 때에 우려하는 부담들을 경감시켜 줄 정책이 필요
- 친환경 농업인은 GAP 인증을 따로 추진하기 보다는 통합적 관리를 선호

□ 친환경과 GAP의 구조적 관계는 독립적 연계가 타당

- GAP 인증을 받아야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두 제도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뜻하며 GAP가 친환경의 하위 수준으로 인식될 것임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의 보완 방안

- 친환경과 GAP를 연계하는 구조는 서로 수평적이고 독립적인 특성을 인정하고, 친환경 인증기준에 GAP 기준 중 일부 추가하여 보완하는 방법이 타당함
 -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생물학적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완
 - ⇒ 그밖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GAP 필수기준을 추가하여 보완

□ 친환경농업인에 대한 GAP 인증 촉진 방안

- 친환경농가들은 GAP 인증을 추가로 추진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심사 절차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GAP 인증을 추가로 받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친환경인증기관에게 GA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친환경인증기관 지정기준은 6개월 이상의 기관 운영자금이 확보되어 있다면 GAP 인증기관 지정기준에도 적합

-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은 GAP 심사원교육을 수료한다면 GAP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에도 적합

□ 친환경농업과 GAP의 연계를 위한 법령 개정의 필요

- 친환경농어업법령에서 인증기준(농관원 고시)의 개정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생물학적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준 보완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생물학적 안전성 강화 외 GAP 필수기준의 보완

-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서 인증기관 지정 관련 규정의 개정
 - 친환경인증기관이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 신청한 경우 심사 생략이 가능하도록 개정

□ 향후 과제

- 친환경인증과 GAP 인증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농가 관리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과 GAP 정보서비스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
- 생산자가 두 인증에 대한 공통사항을 한 번에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두 제도 간의 협력 필요
- 두 제도의 연계 운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비자 편익을 적극 홍보하여 국가 인증제도의 신뢰성 향상

정책연구보고 R07

친환경인증 농가의 GAP 취득 연계 방안
- 요약 본 -

2017년 12월 인쇄

2017년 12월 발행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944-01

편저 · 발행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기관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50, 1108호
TEL:031-424-9792 FAX:031-424-9793
